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급식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포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42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8.

다.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생략)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 ----- ----- -----.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1. ----- ----- -----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¹⁾으로 제정된 것으로,

1)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2조제3호²⁾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³⁾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급식에 관한 경비 부담의 주체 >

경비 종류	원 칙	예 외
급식시설·설비비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급식운영비 ^{*4)}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	보호자
식품비	보호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임.

아울러 같은 법 제9조⁵⁾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2)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5)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실시에 따른 보호자 부담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제5조6)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 27)에서는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을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조손가족 등의 학생’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재 급식비 지원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⁸⁾되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중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 급식이 제공⁹⁾되고 있지만,

기숙사 운영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 따른 조식·석식에 대한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 학생에게 “수익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¹⁰⁾의 전부 또는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8)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 이양을 결정(2004.4월)하였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학생 중식지원”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2005.8월)하였음.

9) 2024년 전국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582만명 대상 7조 959억원 지원

10)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등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시·도교육청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경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손가족 등의 지원대상자 학생에 대한 우선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24학년도 무상급식 지원 계획 >

학교급	학생수 (천명)	지원 학생수 (천명)	재원부담(억원)				
			교육청	지자체			계
				광역시	기초	소계	
유치원	531	531	3,334 (66.8%)	780 (15.6%)	875 (17.6%)	1,655 (33.2%)	4,989 (100%)
초중등학교	5,288	5,288	43,946 (66.6%)	10,642 (16.1%)	11,382 (17.3%)	22,024 (33.4%)	65,970 (100%)
합계	5,819	5,819	47,280 (66.6%)	11,422 (16.1%)	12,257 (17.3%)	23,679 (33.4%)	70,959 (100%)

자료: 교육부(3.1.기준, 교육청 제출자료)

< 2023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급식 소요 경비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지원금	보호자부담금	발전기금/기타	계
식품비		19,747	15,833	3,142	1,675	40,397
운영비	인건비	25,683	742	356	148	26,929
	연료비 기타	3,279	274	206	213	3,972
	시설 유지비	558	2	0	123	683
시설 설비비		5,479	27	0	91	5,597
계		54,746	16,878	3,704	2,250	77,578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 가정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지원대상자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급식경비 지원 시 취약계층에게 우선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우선 지원대상에 조손가족 등의 학생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을 포함하려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¹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

1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024.11.18., 의안번호 제2205641호